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상권제도(BID) 도입 방안

- I. 문제 제기
- II. 지역상권 관련 논의
- III. 해외의 지역상권제도
- IV. 한국의 지역상권제도 도입 방안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상권제도(BID) 도입 방안

I

문제 제기

- 1960년대 이후 유럽, 미국 등의 구도시에서 발생하기 시작한 도심지역 쇠퇴 현상은 물리적 환경의 질 저하와 함께 인구 및 산업의 교외유출로 인구 및 고용 감소, 경제침체 등의 경제·사회적 쇠퇴현상이 병행되어 옴
 - 도심 쇠퇴란 도시내 인구, 도시경제, 물리적 환경 등의 측면에서 물적, 양적 저하 현상이 일부 또는 전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함
 - 도심공동화 문제는 상주인구 감소와 인구의 계층적 편중, 주택 노후화와 주거지역의 슬럼화, 기반시설 및 서비스 시설의 불충분한 공급과 노후화, 산업쇠퇴, 사회적 불이익의 집중과 집단적 빈곤 문제 등을 내포함
- 일반적으로 도심공동화는 대도시 중심부에서 상업·업무·행정 등의 중추 관리 기능이 집적하여 지가와 지대가 최고조로 상승함에 따라 지대 지불 능력이 없는 기능들이 시 외곽으로 이전함으로써 나타남
 - 도심공동화는 지가의 상승없이 교통의 발달에 의한 직주분리나 도심의 거주환경 악화로 인하여 나타나기도 함

- 기존 중심지역의 주요 기능이 상실되거나 이전 등으로 인하여 기능이 약화될 때도 발생
 - 한국의 도심공동화는 물리적 환경 측면에서 중심시가지에서 저밀집시가 지, 불량주택의 과밀, 편익시설의 부족, 기능의 혼재 등이고,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는 거주 연령계층의 편중, 쇠퇴산업의 집중으로 나타나며, 최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계획으로 인해 그에 따른 도심공동화 현상도 야기됨
- 한국에서도 구도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중소규모 이상의 도시에서 그간 무분별하게 진행된 도시 확산과 함께 도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 도심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의 소멸, 지역의 물리적 쇠퇴의 지속, 생활환경 악화에 따른 지지인구 기반의 감소, 경쟁력 약화에 따른 경제 중심지로서의 위상 약화 등 제반 문제를 파생시킴
- 이에 따라 쇠퇴하는 중심기능의 재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서구에서는 이미 쇠퇴하는 중심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음
- 본고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서, 쇠퇴해가는 중심상권의 재활성화를 위해 서구에서 이미 도입하여 성과를 보이고 있는 지역상권(BID: Business Improvement District)제도에 대한 한국형 도입 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함

II

지역상권 관련 논의

■ 상권의 개념

- 개념적 측면에서 상권이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래권역을 의미
 - 미국의 마케팅협회에서는 상권을 ‘거리단위가 있는 집단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고 배달하는데 양과 비용에 관해 경제적으로 어떤 경계선에 따라 결정하는 지역’으로 정의
 - 소비자가 경쟁가격이 있는 통상의 가격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범위, 즉 이러한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이라 정의
- 상권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이에 대한 교환대가로 재화를 소비하는 소비자가 있어야 하며, 상인들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경제적 활동과 그 과정인 거래가 포함되어야 함
 - 거래행위를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가 유통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데, 거래활동에서 중요한 교통·수송 등을 감안하면 장소는 중요한 상권의 구성요소임
- 상권의 범위설정은 일정 공간내 점포수, 취급하는 상품의 종류, 상업시설 및 기반시설의 집적도, 철도, 버스, 주차장 등 교통수단의 편리함 등이 고려되기도 함
 - 크기, 특성, 거리, 지역, 위치에 따라 상권은 다양하게 구분되기 때문에 사회현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관점에서 보면 그 범위를 공간적으로 한정짓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상권의 구분

- 소매점포가 공간적으로 어디에 입지하며, 어떠한 지역을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는가에 대한 구조적 특성을 알기 위해서는 상권의 유형을 살펴보면 유용함
- 도시내 상가구조를 판매상품 종류, 점포 집적형태, 구매력 정도 등에 따라 중심상업지구(Central Business District), 부도심상가(Outlying Business Cener), 간선도로변상가(Principal Business Thoroughfare), 근린상가(Neighborhood Business Street), 독립상점군(Isolated Store Cluster) 등 5계층으로 분류한 이래 (Proudfoot, 1937) 다양한 지역상권 구조를 분류하고 있음
- Burns(1959)는 도심부 상점가(the town center: CBD), 지구중심 상점가(District Center), 근린주거 상점가(Neighborhood center), 부도심 상점가(Sub Center)의 4개 구조로 제시하기도 함
- 중심지이론을 원용하여 도시내부구조의 중심지계층체계를 최초로 규명한 Carol(1960)은 도시내의 상점가를 CBD 상업지구, 지역중심 상업지구, 근린주거 상업지구 등 3개 계층으로 분류한 다음, 상업지역 계층위계에 따라 동종의 판매상품이라도 상품의 품목수, 상품의 질이 다르다는 사실을 제시함
- Kotler(2000)도 점포집적에 따라 중심상업지구(CBD), 지역쇼핑센터(Regional Shopping Center), 지구쇼핑센터(Community Shopping Center), 근린쇼핑센터(Neighborhood Shopping Center)로 분류

- 최근에는 위 개념들이 혼용되어 상권을 크기, 특성, 거리, 지역, 위치에 따라 유형별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상권의 개념적 수준은 지역에 따라 구분한 '도심상권, 부도심상권, 지방상권 등'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표 1〉 상권의 유형적 구분

기 준	유 형 적 구 분
크 기	광역상권, 지역상권, 골목상권 등
특 성	단독상권, 연합상권 등
거 리	1차상권, 2차상권, 3차상권 등
지 역	도심상권, 부도심상권, 지방상권 등
위 치	역세상권, 중심상권, 주거지상권 등

■ 상권의 형성과정

- 최근 신도시 개발에 따라 인위적인 상권도 형성되고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상권은 오랜 시간동안 주변지역 거주인구의 소비수준과 주거, 업무, 행정, 교육, 교통 여건에 따라 형성됨
 - 소매 점포들은 일정 장소에 군집하는 집적양상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형태가 지속적으로 확대·유지됨에 따라 상권이 형성되는 것임
- 우리나라의 경우도 몇몇 신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상권은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발전됨
 - 급속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도시화과정을 거치는 동안 전근대적 요소와 현대적 요소가 혼재되어 성장

- 상권이 형성되고 나면, 상권 또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성장단계에 따라 성장기 상권, 성숙기 상권, 쇠퇴기 상권으로 나뉨
 - 쇠퇴기 상권은 도시발전과정에서 제외된 지역과 기존에 형성된 구도심 상권에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건물이 낡고 노후되어 있는 특징이 있음

■ 지역상권의 관리

- 쇠퇴해가는 상권의 재활성화를 위해 해당 상인들뿐만 아니라 정부와 시민이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해당 상권의 지역의 얼굴과도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임
 - 도시의 발달에 따라 자연발생적으로 중심업무지구(CBD)를 형성하게 된 지역상권은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지역의 역사·문화·사회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이해되기 시작
 - 해당 지역의 핵심적 가치를 지니는 지니고 있는 지역상권, 즉 중심지의 관리를 통한 지역 재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지역상권관리(BID)제도란 쇠퇴하는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나 상권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구가 상권 구역의 획정, 사업승인, 상권활성화 사업, 지원방안, 자원조달, 조직의 제반활동 및 절차 등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의미함
- 미국, 영국, 일본 등 서구에서는 이미 도심 쇠퇴에 대응하는 문제해결방안으로서 다양한 지역상권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Ⅲ

해외의 지역상권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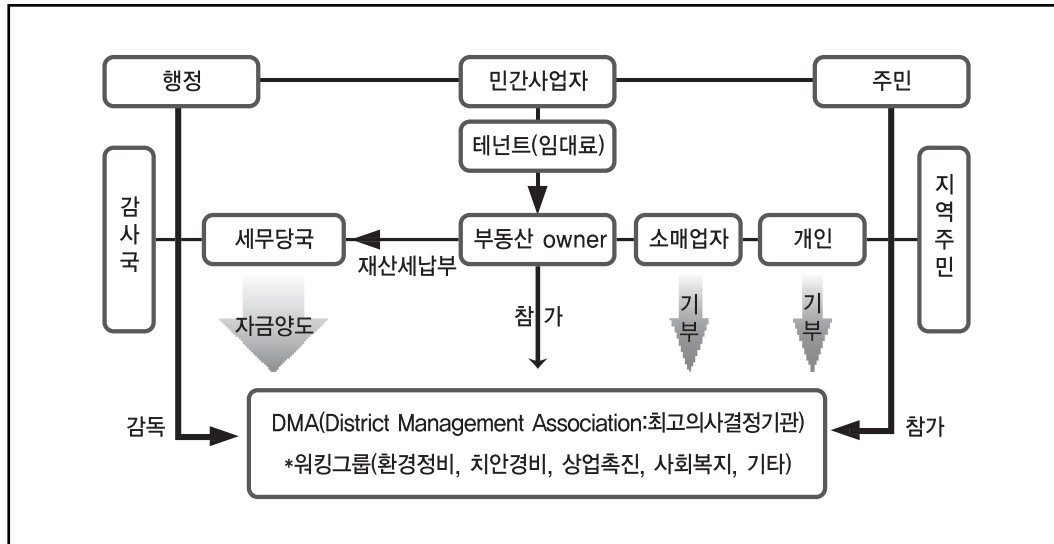
■ 미국의 지역상권제도

- 자동차 보급의 증가와 고속도로의 발달로 인한 교외화의 진전으로 도심기능 쇠퇴
 - 쇠퇴한 도심의 중심부에서 높은 공실률, 쓰레기, 범죄, 노숙자, 주차 공간 부족, 환경오염 등의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재정악화와 교육의 질 저하 및 중심시가지 인프라 취약 등으로 연결되어 도시 기능 마비
- 도시 중심시가지의 침체된 상권(지역산업)의 활성화 도모하기 위해 환경 정비
 - 경제성장의 엔진으로서 지역 사회 구심점 역할 수행
- 1950년대부터 도시 중심시가지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도입되어 1970~1980년대에 보다 심화된 도시 중심시가지 상권의 침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BID(Business Improvement District)를 확대 실시함
 - 필라델피아에서 처음 도입된 BID는 1980년대부터 미국 대도시 및 중소도시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영국을 비롯한 유럽지역과 아시아의 일본까지 확산됨
- BID 조직은 해당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방정부의 허가에 의해 설립된 상권 활성화 및 관리를 위한 자발적 비영리 민간협의체 조직으로, 지역에 따라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다양한 사업을 전개
 - 뉴욕 맨하튼의 타임스퀘어 상권 활성화를 위한 Time Square Alliance, 필라델피아의 Center City District, 덴버의 Denver Partnership 등

- BID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심시가지의 특정지구내에 있는 부동산 소유자 및 사업자가 특별세 또는 특별요금을 부담하는 대신, 해당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니즈에 맞게 시설, 설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권한을 갖는 조직임
- BID에 의해 징수된 자금을 활용하는 조직 유형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됨
 - 지방자치단체의 규제로부터 완전히 자립한 형태로서 스스로 예산을 편성·징수하며 조직을 만드는 경우
 - 부분적인 자치권을 가지는 형태로, 지방자치단체가 간부를 선임하고 징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에 완전히 의존하는 형태로 인사 및 징세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는 경우
- BID의 주요 역할은 정부제공 서비스의 보완기능으로 안전요원 고용, 공원 및 공공시설의 청소 및 유지 관리 등이며, 정부가 제공하기 어려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도 청소와 제설작업, 마케팅, 판촉, 광고, 상가유치, 고용창출 등도 수행
 - 지역경제 관련 사업에 대한 지역내 입장전달, 모니터링을 통한 관련 정부 서비스 개선 건의 등 지역대표로서의 역할도 수행
- BID는 상업, 업무, 공업지역으로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가진 지구에서 가장 높은 적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지구 내에 상점, 사업체수의 비율이 높은 지역,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세수 기반을 가진 지역
 - 공실률이 낮고, 가급적 주거, 공공, 종교건물 등이 거의 없는 지역
 -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쇼핑객이나 사업체 유치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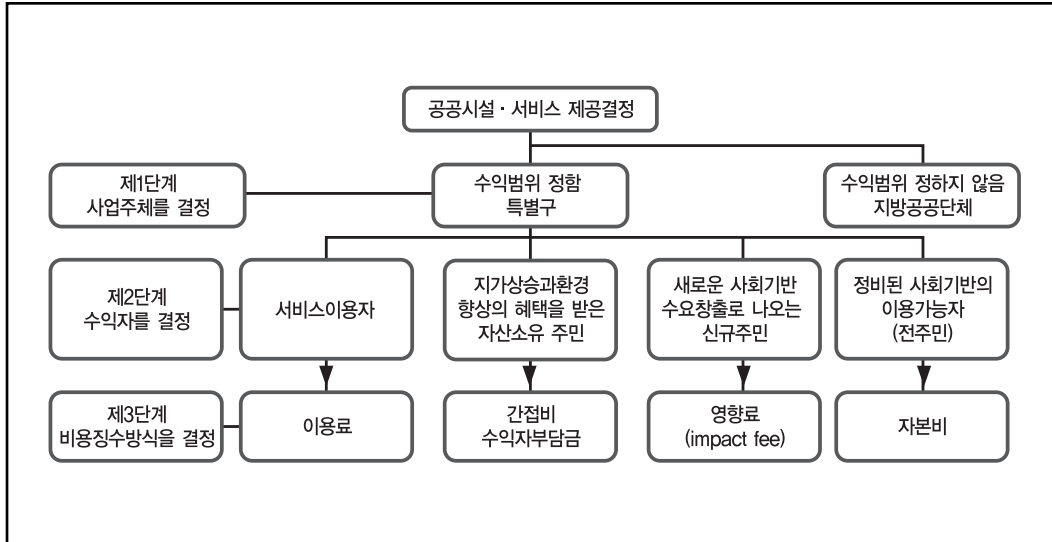
- 지구환경개선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상인, 사업주, 토지주 등 주도적 그룹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
- 지구경계는 예정지구 내 토지소유주와 상인들에 의해 결정되며, 해당시 상업서비스과는 구역설정을 위한 기술적인 지원을 담당하고 가급적이면 상업, 업무지역으로 국한하며 주거, 공공건물 등은 제외시키도록 유도하고 있음
- BID의 다양한 사업 추진 및 운영은 주민 대표로 구성된 지구운영협회(DMA: District Management Association)가 수행하도록 BID법에 명시하고 지구운영협회는 시 공무원, 상인, 주거지역 세입자, 토지주 등의 대표로 구성되는 비영리 조직으로 출범
 - 운영주체는 BID 예비단계에서 추진위원회 형태로 예비계획 수립 및 주민 의사 수렴, 관공서와의 협의 등의 역할 담당
- 운영주체의 목표
 - 매력적인 투자와 가치 유지 및 제공, 지구 사업 커뮤니티의 역할에 맞는 사업 제공
 - 보조적 서비스 및 안정 자금 지원, 시장 변화에 대한 빠르고 유연한 대응

〈그림 1〉 BID의 구성



- BID는 재산 소유주들과 상인들이 당해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이용하는 조직 구성 및 재정 메커니즘으로 지역마다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되나 공통적으로 법적 지정된 지구 내의 건축주들은 해당 지구에 필요한 시설 또는 서비스제공에 대한 특별세금을 납부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음
- BID의 재정기반은 정부·지자체의 TCM이나 TMO처럼 세금 의존 방식이 아닌 부담금에 의한 비용배분을 함으로써 지구 내 모든 부동산 소유자·사업자를 대상으로 비용을 분담하는 수익자 부담 원칙(자산세 5~6%)
- 부담금은 시에서 일반 세금과 함께 징수하며, 지구운영협회에 전액 지원하되 지구 계획에 따라 해당지구에만 사용하고 지구에 따라 세금 징수를 운영주체에 위임하는 경우도 있음
- 이 밖에 이벤트 개최 등에 의한 사업 수입, 시로부터의 조성기금, 채권 발행 등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금 조성의 어려움으로 주(지자체) 중심의 추진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그림 2〉 특별 부담금의 비용 징수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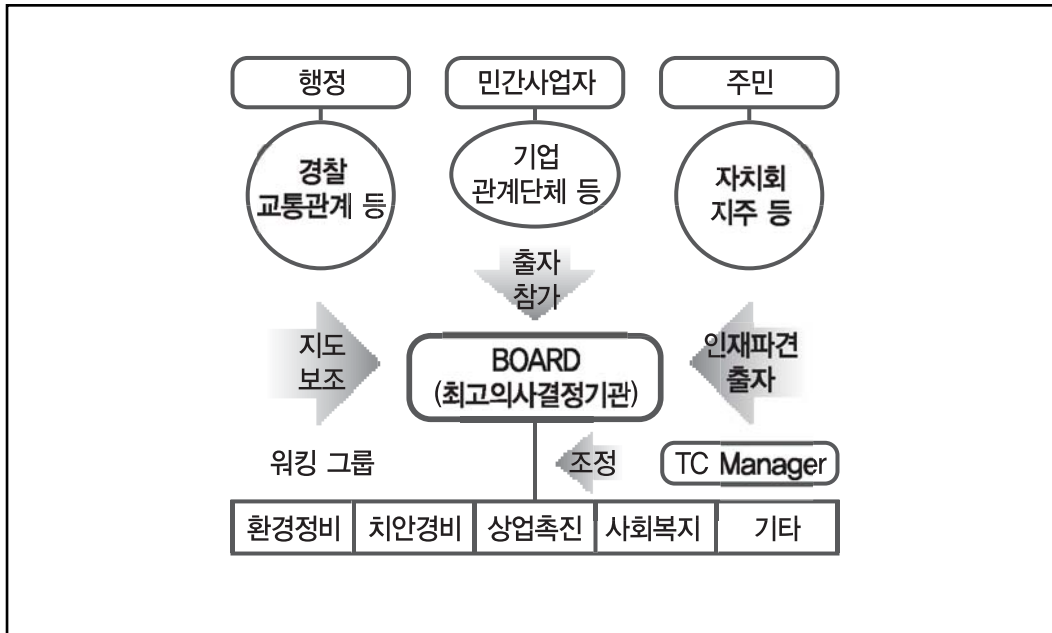


■ 영국의 지역상권제도

- 1960~70년대 산업화의 영향으로 구도심(중심시가지)의 급속한 쇠퇴로 위축된 구도심 밀집 상업가의 활성화를 위해 80년대 말부터 TCM(Town Center Management) 시책을 도입 상권개발을 입체적으로 추진
 - 근거법률 : PPG 6(Planning Policy Guidance 6, 1986년 제정)
- TCM의 목적은 활기찬 도심을 만들기 위해 지역 경제 향상을 도모한 것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활성화 방안 존중, 문화 및 관광 전략과 연계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등을 추구
- TCM 대상지 요건은 상업지역과 업무 지역에서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인구 기반이 확보된 지역이나 인구유입 요소가 있는 지역
 -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 할 수 있는 세수기반

- 환경개선사업을 위해 노력하는 상인, 사업주, 토지주 등의 리더 그룹이 형성된 지역(컨센서스 확보)
- 지방 정부의 적극적 활동과 조력지원 시스템
- 지구설정은 예정지구 내 TCM 준비위에서 결정되며, 지방자치단체 지원과 는 구역 설정을 위한 기술적인 지원을 담당
 - 대상지역은 상업지역과 업무지역으로 랜드마크(landmark)를 이룰 수 있는 지역임
 - 도심의 상업, 주거, 교역, 문화, 오락, 레저 활동 등 지역의 중심으로 발전 가능한 곳
- 운영주체는 종합적인 상권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파트너십 단체 또는 제 3섹터 주식회사(공익목적 추구, 비영리) 형태임
 - 파트너십 : 지자체, 부동산개발 사업자, 상인대표, 건물주인, 지역시민 및 민간단체 등이 참여
 - 주식회사 : 지자체, 부동산개발 사업자, 건물주인, 상인 등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 각각 자본금을 투자
- TCM에는 각 파트너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기구로 운영위원회(Board), 집행 사무국에는 상권개발, 마케팅, 도시개발 관련 등에 능력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근무

〈그림 3〉 T C M 구조도



- TCM의 재원은 정부계 보조금이 80% 정도(중앙정부, 지자체, EU 보조금), 민간 부담금이 20% 내외(건물소유자, 상인회비, 대기업후원금, 광고비, 이벤트 수입 등)
 - 상인회비 납부자와 미납자(회비를 내지 않고 개발 이익을 누리게 되는 무임승차자) 문제로 인해 징수가 부진
- 공공부문으로부터는 EU의 구조기금과 중앙정부의 SRB 예산 보조를 받음
 - Structure Fund: EU지역의 균형 발전 및 사회 안전망 구축과 경제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지역 개발 기금
 - SRB(Single Regeneration Budget): 성과 측정 결과에 따라 5~7년 동안 자금지원

- 2002년 SP(Single Program) 실시로 11개 보조금을 통합하여 RDA(Regional Development Agency)가 집행(SRB도 포함)
- 지자체는 Council Tax1와 Business Tax로 지원
- 기타 민간부문으로부터는 상권 개발로 이익을 얻은 부동산 소유 기업 또는 대형 소매점으로부터 자금 제공 받음
 - 막스앤스펜서(Marks & Spenser), 세인즈브리(Sainsbury), 부츠(Boots)
 - 로터리(복권) 기금, 대기업 지원금, 광고 수입 등을 통해 자금 제공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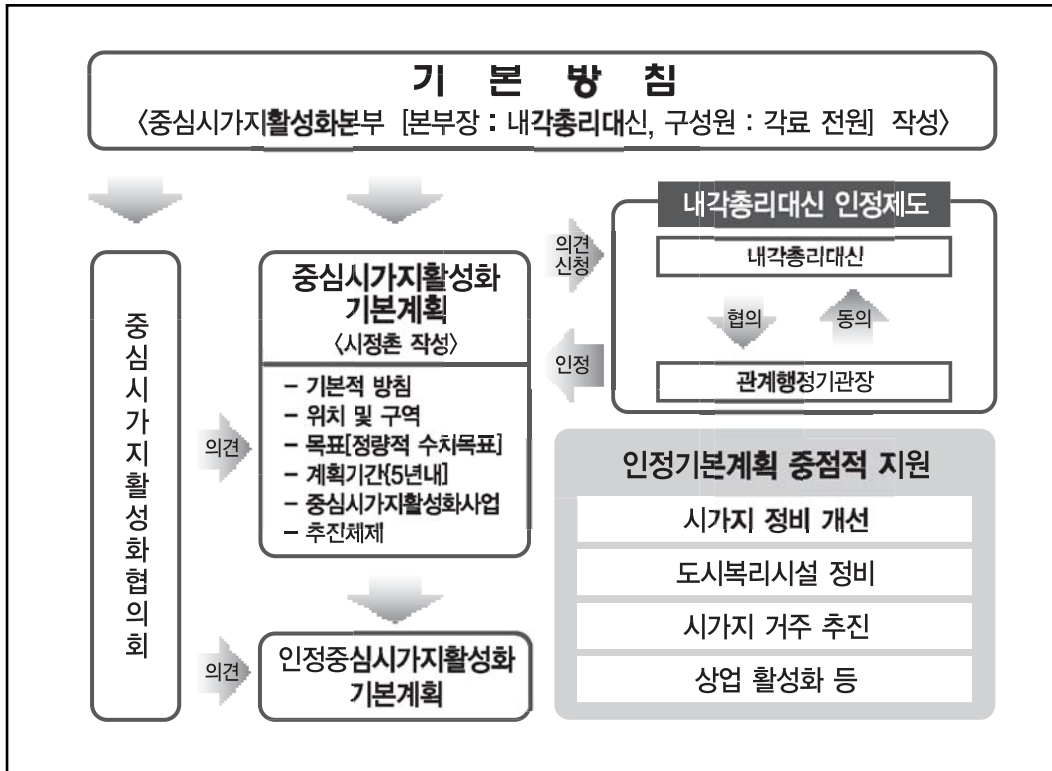
■ 일본의 지역상권제도

- 1980년대 이후 교외형 쇼핑센터의 개발이 계기가 되어 90년대에 기존 시가지 소매업이 급속히 피폐하게 되었으며 각종 빈 점포대책도 대부분 효과를 보지 못함
 - 도시자체의 아이덴티티가 상실되는 상황에서 도시중심부 쇠퇴의 가속화와 소매업의 활성화를 따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대두됨
-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 다양화, 인구의 교외 분산, 상업 시설 및 공공시설의 교외이전 등으로 도시 기능이 쇠퇴함
- 1998년 중심시가지의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활성화를 위해 중심시가지활성화법 제정
 - 시가지의 정비개선 및 상업 활동 활성화의 일체적 추진
 - 국민생활의 향상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 대점입지법, 개정도시계획법 등과의 연계로 전국적 규모 사업추진의 법적 근거가 됨
- 대상중심시가지는 중심시가지가 지역경제 및 사회의 발전에 미치는 역할 측면에서 도시기능 증진 및 경제 활력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심시가지
 - 해당시가지에 상당수의 소매상업자가 집적해 있고 아울러 도시기능이 상당정도 집적해 있어, 당해 시정촌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시가지
 - 해당시가지의 토지이용 및 상업 활동의 상황으로 보아 기능적인 도시 활동의 확보 또는 경제 활력의 유지에 지장을 주거나 혹은 앞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가지
 - 해당시가지에 있어 시가지의 정비개선 및 상업 등의 활성화를 하나의 묶음으로 일괄적으로 추진하여 해당시가지가 존재하는 시정촌 및 그 주변지역의 발전에 있어 유효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시가지
- 대상 중심시가지의 요건
 - 시정촌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시가지로써 1시정촌을 1구역으로 함
 - 토지이용과 제 기능의 집적실태 등을 감안하여 하나의 묶음으로 계획된 사업을 집중적,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적정한 범위일 것
 - 각종 토지이용계획의 본래 취지에 맞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도시계획이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구역이 도시계획법에 정하는 상업지역 또는 근린상업지역에 포함하도록 조정
 - 가능한 한 시정촌의 구역내 경계, 도로, 하천, 철도 등의 시설과 도시계획도로 등에 따라 토지의 범위를 명확하게 표시

- 일본의 중심시가지활성화사업은 국가가 작성·고시한 기본방침에 따라 시정촌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가지 정비·개선, 상업활성화사업을 추진하며, 시가지 정비·개선은 지방공공단체나 제3섹터가 국가 보조금을 받아 주차장, 도로, 공원, 상업기반시설 등을 정비
 - 상업활성화사업은 아케이드 설치, 빈점포 활용사업 등이며 주로 인정구상 추진사업자(TMO:Town Management Organization)가 추진하며 해당 시정촌이 이를 승인
 - TMO는 상공회, 상공회의소, 제3섹터 특정회사, 재단법인, NPO가 될 수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함 (2006년 법률개정으로 중심시가지활성화협의회로 변경된 조직임)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의 목표로 2006년 개정법률에 따라 구성된 중심시가지활성화협의회는 상공회의소, 시정촌, 민간사업자,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함
- 중앙부처 차원에서는 내각부를 비롯,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총무성, 농림수산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경찰청 등 8개 관계 부처가 함께 지원 사업을 추진
 - 여러 부처가 관련된 사업의 총괄을 위해 내각부가 시정촌이 작성한 기본계획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32개 중심시가지활성화기본계획이 인정되어 운영되고 있음

〈그림 4〉 중심시가지 활성화 사업의 추진체계



IV

한국의 지역상권제도 도입방안

■ 지역상권 활성화구역의 지정

- 지역의 중심상권지역은 상업, 업무, 거주 등 도시기능이 집적하고 있으며, 오랜 역사 속에서 지역의 역사·문화·사회적 가치를 지녀 오고 있는 핵심 지역이어서, 쇠퇴하고 있는 지역의 중심상권지역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전체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음
- 다만 이를 위한 제도 도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심상권지역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구역을 정할 필요가 있음
- 서구의 경우, 미국은 대상지 선정요건을 ① 지구내 상점, 사업체수의 비율이 높은 지역, ②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세수기반을 가진 지역, ③ 공실률이 낮으며 가급적 주거, 공공, 종교건물 등이 거의 없는 지역, ④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쇼핑객이나 사업체 유치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지역, ⑤ 지구환경개선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상인, 사업주, 토지주 등 주도적 그룹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 지구경계는 예정지구내 토지소유주와 상인들에 의해 결정
- 영국은 ① 인구기반이 확보된 지역이나 인구유입 요소가 있는 지역, ②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세수기반을 가진 지역, ③ 환경개선사업을 위해 노력하는 상인, 사업주, 토지주 등의 리더 그룹이 형성된 지역, ④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활동과 지원 시스템이 있는 지역 등이며, 지구설정은 예정지구내 TCM 준비위에서 결정
- 미국과 영국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입각해 있어, 지구설정의 권한 또한 민간에 위임되어 있으며, 공공부문은 기술적인 지원만을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지역상권관리에 대한 민간수준의 역할이 제한적이며, 공공부문의 관심도 크지 않은 한국의 경우, 지역상권관리를 위한 지역상권 활성화 구역지정은 일본 ① 해당시가지에 상당수의 소매상업자가 집적해 있고 아울러 도시기능이 상당정도 집적해 있어, 당해 시정촌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시가지, ② 해당시가지의 토지이용 및 상업 활동의 상황으로 보아 기능적인 도시 활동의 확보 또는 경제 활력의 유지에 지장을 주거나 혹은 앞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가지, ③ 해당시가지에 있어 시가지의 정비개선 및 상업 등의 활성화를 하나의 묶음으로 일괄적으로 추진하여 해당시가지가 존재하는 시정촌 및 그 주변지역의 발전에 있어 유효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시가지)처럼 기초자치단체에 일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공공부문 가운데에서 해당 지역상권에 대한 이해가 가장 높으며, 지역 상공회의소, 지역상인단체, 지역주민등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 활성화를 위해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을 지역상권 활성화 구역을 지정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해당 자치단체가 상권활성화 구역을 지정하기에 앞서, ① 중심상권지역의 현황에 관한 사항, ② 중심상권지역의 상업기반시설 등의 실태에 관한 사항, ③ 중심상권지역의 환경변화 전망, ④ 기타 상권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실태조사 실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 지역상권 활성화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 기초자치단체가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면, 지정된 구역내의 상권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우선 기초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지역상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이 때 지역주민 및 관련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에, 지원대상이 되는 상권 활성화구역의 지역 특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사업을 선택하여 기본계획을 작성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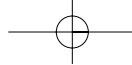
- 지역상권 활성화 기본계획 책정에는 지역주민의 이해와 협력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간사업자와 협력할 필요도 있음
 - 상권 활성화에는 신산업 육성, 상업 활성화, 도심거주 추진, 지역문화 및 관광진흥 등 민간사업자가 관여할 수 있는 부문이 많으므로, 지역상권 개선을 위해 민간사업자와 협력적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자치단체가 수립한 지역상권 활성화 기본계획의 실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를 승인하고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자치단체가 수립한 기본계획을 검토·타당성이 높은 계획에 대해서는 이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용하여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함

■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 수립

-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 차원의 계획 수립, 중앙정부의 지원 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 및 추진체계가 정비되어야 함
 - 중앙정부 차원에서 상권활성화의 종합적 지원계획 작성, 신청된 활성화 기본계획에 대한 승인, 상권활성화에 관한 시책에서 중요한 기획 및 입안 그리고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활성화 기본계획에 근거한 시책 실시 및 추진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담당해야 함
- 일본의 경우 중심시가지활성화사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해 해당 본부를 내각부 산하에 두고, 8개 관련 부처가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 지역상권 활성화 구역의 종합적 측면을 고려하건데, 한국도 이를 상업 활성화 문제로 한정지을 것이 아니라, 상업, 주거, 복지, 문화, 인프라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체계를 구축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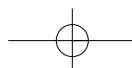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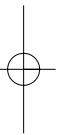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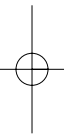
- 우선 지역중심상권 활성화에 관한 법률(가칭) 등을 마련하여, 중앙정부가 사회, 경제, 문화, 복지, 도시계획, 교통 등 기반정비를 위한 기본적인 지침을 수립하도록 함
 - 지침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역중심상권 활성화의 필요성을 지니는 자치단체는 해당 지역내 지역상권 활성화 구역을 지정, 해당 구역에 대한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것임
 - 상권활성화 기본지침에서 기본계획의 기본적인 사항, 사업내용, 지원내용, 추진체계 등을 담도록 함
- 서구의 지역상권제도의 경우, 지역상권의 관리주체로서 민간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를 주도적 추진주체로 설정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민간의 역할이 제한적이므로 관리의 주체는 기초자치단체가 되도록 함
 - 다만, 지역상권 활성화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 상인, 관련 민간 사업자들의 협력적 사업 추진이 필수적이므로 기본계획 작성 및 사업의 추진체계에 있어 민간부문의 역할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줄 필요는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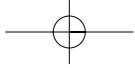
내용문의 : 이 소 영 수석연구원(02-3488-7328, sy2@krila.re.kr)



메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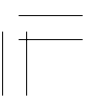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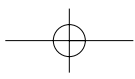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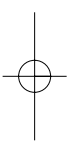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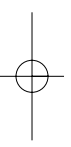
A large rectangular area containing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ypical of a memo or notebook page.





메 모

A large rectangular area containing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serving as a memo template.



「자료 회원」안내

재단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의 항구적인 정착, 발전을 위한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조사, 연구 및 정책개발을 통하여 급변하는 행정변화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1984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법률 제3809호)에 의거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입니다.

당 연구원은 설립 이래 지방자치 전반에 관한 각종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여 관련기관 및 인사에게 보급하여 왔습니다. 당 연구원은 유익한 자료를 여러분이 보다 편리하게 받아 볼 수 있도록 자료회원제를 운영하오니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1. 자료회원 가입방법

당 연구원 소정양식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우송하거나 팩스(02-3488-7370)로 전송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원 홈페이지(자료회원 가입안내)에서 양식을 Down 받아 작성하시고 메일(leeyong@krila.re.kr)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직접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신청은 연중 수시로 하실 수 있으며, 회원의 자격은 회비를 입금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기존 회원은 회비 만 납부)

2. 회원구분, 회비, 자료구독내용, 회비납부방법

회원구분		회비	자료구독내용	회비납부방법
일반회원	개인회원	30,000원	지방행정연구, KRILA FOCUS, 세미나·공청회 초청장 등	지로 납부: 지로 용지발송(지로번호 7630619)
	기관회원	50,000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100,000원	지방행정연구, 연구보고서, 연구자료집, KRILA FOCUS, 세미나·공청회 초청장 등	은행송금: 국민은행 367-01-0044-581 (예금주: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관회원	150,000원		

3. 제 출 처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획관리실 지식정보팀

(137-873)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52-13

T. 02-3488-7363 / F. 02-3488-7370 / E. leeyong@krila.re.kr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http://www.krila.re.kr>

「지방행정연구」원고모집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지방자치관련 전문학술지인 「지방행정연구」에 게재 할 논문을 모집합니다.

「지방행정연구」는 1986년 7월에 제1호 발간을 시작하여 그 동안 자치행정, 지방재정·세제, 지역정책분야의 주제에 대한 수준 있는 연구논문들을 게재하여 지방행정의 전문화에 기여하고, 지방자치관련 분야의 활발한 지식교류를 위한 매체의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으며,

2007년에는 학술진흥재단의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습니다.

투고하신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하는 심사절차를 거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논문심사판정기준에 따라 게재여부를 결정합니다. 관심 있는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1. 연구지 모집분야 : 자치행정, 지방재정·세제, 지역정책·균형발전

2. 연구지 발간일정 : 연 4회 발간

— 2008년 9월호(통권 제74호), 2008년 12월호(통권 제75호)

— 2009년 3월호(통권 제76호), 2009년 6월호(통권 제77호)

3. 논문접수일정 : 연중 수시접수

4. 논문제출 방식 : E-mail로 제출 (local@krila.re.kr)

5. 논문작성 방식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홈페이지(www.krila.re.kr)의

「지방행정연구지 기고안내」 참조

6. 제 출 처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획관리실 연구지원팀

(137-873)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52-13

T. 02-3488-7361 / F. 02-3488-7305 / E. local@krila.re.kr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http://www.krila.re.kr>